2023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가평마장초등학교

Ⅰ 추진 근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 「2023 경기주요 기본계획」 정책3. 교육활동 보호 강화

Ⅱ 추진 배경

- ❑ 교육활동이 대면으로 전환 이후 교권 침해 사안 지속적 증가 추세
-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 행정, 법률 상담 건수 증가
- ❑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필요

Ⅲ 추진 목적

- ❑ 교권 확립과 스승 존경으로 교원의 자긍심 고취
- ❑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복귀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Ⅳ 실태분석 및 추진 과제

1. 실태분석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문제점

-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별도 조치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움
- 심각한 폭행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전문성 부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보호 기구로서의 기능 미약

2. 실태분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추진 방향

○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교육에 중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원회로 칭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화해 · 조정 기능 강화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팀 현장 지원

○ 인권보호센터 내 교육활동 보호팀 역할 강화 (상담, 조사, 치료, 법률, 행정적 지원 등)

○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가 침해받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즉시 격리조치, 학교장 책무 부여 등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치료 및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심리치료기관 지정·운영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학생, 학부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인권 상호존중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토론회, 연수, 교권 보호 교육자료 개발 · 보급 등

V 추진 내용

1.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 학생·교원: 모든 학생(연 1회) 및 교원 대상 교육(학기별 1회)실시
- 학부모: 학부모 총회에서 교육 실시(연 1회)

□ 상호 존중 문화 확산
- 학생자치 활동(다모임) 활용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5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토론활동, 프로젝트 학습

2.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 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의미**

- 「교원지위법」 상의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상의 '교육활동' 정의규정에 준하여 해석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4쪽 상세내용 참고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2023.3.23. 시행)**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신설)**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학부모,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사안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교육적 해결
  - 분쟁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당사자 간 조정,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정통신문, 문자발송,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학부모 상담 절차 안내
  -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적극 계도

□ **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예시

학교교권위원회 구성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교원수 (1/2 초과금지)	2명	**3명**	3명	4명	4명	5명
개의정족수(2/3 이상출석)	4명	**4명**	5명	6명	6명	7명

-위원수 : 위원장 포함 6명으로 구성

-위원구성 : 교원, 학부모 등으로 하며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1) 교원 : 교직원회의를 통해 추천

2) 학부모 : 학부모회를 통해 추천

3) 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교육활동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신고 및 상담)** 교권보호책임관(교감)에게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접수**

○ **(보호조치)** 피해교원 우선 보호조치

○ **(침해사안보고) 교육지원청과 동부교원보호지원센터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 등을 근거로 운영

○ **(조치결정)**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학부모 등 조치

○ **(심의결과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결과 교육청 보고


사안 발생
초기대응
관련 교원 보호조치
교육현장 안정화조치
• 관련 교원 안정 및 보호조치
• 침해행위자 진정 조치 및 학생일 경우 보호자 연락
• 관련 교원 요청시
–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작성 안내
응급상황 119
범죄상황 112
사안 조사 · 발생 보고
관련 교원 보호조치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보고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접수
– 분쟁 조정 절차 신청 여부 확인
• 필요시 관련 교원 보호조치 시행 (특별휴가,공무상병가)
• 사안처리대장 (신고서 접수대장, 서식22) 작성
• 교육지원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사안 발생 보고 ([서식5])
• 사안조사
– 관련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서식2])
– 목격자 등 사실확인서([서식3])
– 증거자료 등
발생보고 (48시간이내)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 분쟁조정 · 조치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학교장 처분
분쟁조정
★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조정 ([서식6,7])
전문가 연계 조정 (화해중재단 추후 안내 예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준비
– 출석 안내서([서식4]) 발송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침해행위자 및 보호자 의견청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 침해행위자 조치 심의 및 의결
– 관련 교원 보호조치 의결(권고)
– 조치 의결서 작성([서식10])
• 학교장 처분 및 불복절차 안내
– 조치 결과 통지서 발송 ([서식11~13])
조정성립
조정 불성립
⇩
⇩
⇩
• 사안종료
• 결과보고 ([서식14])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 경기도 교권보호 위원회 분쟁 재조정
관련 절차 등 문의 사항 있는 경우 교육 지원청 및 경기교권보호 지원센터 이용
조치이행 · 사후처리
교육지원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보고
조치 이행
사후 처리
• 교육지원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결과보고 ([서식14])
• 조치 이행
• 보호조치 이행
• 보호조치 비용 신청 등
• 학교 자체 재발방지 방안 마련
결과 보고 (5일이내)

나. 교육활동 침해 기타 대응 방안

○ **(학교규칙 개정)** **5월까지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규정 마련**

-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 개정

○ **(침해 학생 지도)** 상담.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실시

호	조치내용	이행 기준일	조치기한	비고
1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7호	퇴학(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교육활동 침해 수준에 따라 3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1, 2, 4, 5호 조치에 병과 가능
- 6호 전학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학생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이수 의무화(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외에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세분화하여 침해학생 조치

○ **(중대사안 고발)** 침해사안이 중대할 경우 교육청에 고발 의뢰

○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원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정 시 안내
-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우선 신청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서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운영 내용)** 보호조치 필요시 특별휴가(5일), 공무상병가(6일) 부여가능,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원치유지원 신청,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목적:** 교권침해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 **방침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인권보호센터(교권보호팀), 학교, 법원, 경찰, 검찰,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

□**유관기관별 협력체제 :** Ⅵ. 추진체제 참조

Ⅵ 추진 체제

